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577

발의연월일: 2020. 10. 20.

발 의 자:도종환·강선우·이병훈

장경태 • 이규민 • 최혜영

김남국 • 양정숙 • 양원영

정청래 • 이상헌 • 유정주

이재정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학관 자료의 수집·보존·복원·관리·전시 및 활용과 문학관 자료에 대한 조사·연구, 문학관 자료와 관련된 국내외 교류· 협력 등을 위하여 문학관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도서관법」이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달리 현행법에 문학관에 대한 재산 기부나 문학관 자료의 교환·양여·대여관련 근거 규정이 없어 문학관 운영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박물관·미술관 협력망과 같이 문학관 간에 협력망을 구축하여 문학관 자료의 효율적인 유통·관리 및 각종 문학관의 상호 협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누구든지 문학관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료나 금 전 등을 기증 또는 기부할 수 있는 근거 및 문학관 상호간 또는 도서 관이나 박물관과 문학관 자료를 교환·양여·대여하거나 그 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립한국문학관으로 하여금 문학관 협력망을 구성하도록 하여 문학관 설립·운영에 있어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신설 등).

법률 제 호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감정"을 "감정 등"으로, "시"를 "시, 시조"로, "평론"을 "평론, 아동문학"으로 한다.

제4장에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문학관 협력망) ① 국립한국문학관은 문학관 자료의 효율적 인 유통·관리 및 이용과 각종 문학관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 한 협력 체제로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문학관 협력망(이 하 "협력망"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 1. 전산 정보 체계를 통한 정보와 자료의 유통
- 2. 문학관 자료의 정리, 정보처리 및 시설 등의 표준화
- 3.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상호 대여 체계 구비 등 문학관 운영의 정보화·효율화
- 4. 그 밖에 문학관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 ② 문학관은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서관법」, 「문화예술진흥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및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미술관, 지방문화원 등 다른 문화시설과 협력하여야 한다.

- ③ 협력망의 조직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0조의3(재산의 기부) ① 누구든지 문학관 시설의 설치, 문학관 자료의 확충 등 문학관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부동산, 문학관 자료로서 가치가 있는 유물과 유품 등의 재산을 문학관에 기부 또는 기증할 수 있다.
 - ② 국립문학관 및 공립문학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 또는 기증이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이를 접수할 수 있다.
- 제30조의4(자료의 양여 등) ① 문학관은 다른 문학관,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등 과 문학관 자료를 교환·양여(讓與) 또는 대여하거나 그 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학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또는 「물품관리법」에 따라 문학관에 무상이나 유상으로 양여·대여하거나 그 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 ③ 문학관은 제2항에 따라 문학관 자료를 대여받거나 보관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존·처리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정 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학"이란 사상이나 감정을 1. ------감정 언어로 표현한 예술작품으로 서 <u>시</u>, 소설, 희곡, 수필, <u>평</u> -----시, 시조-----론 등을 말한다. ----평론, 아동문학----2. ~ 5.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제30조의2(문학관 협력망) ① 국 <신 설> 립한국문학관은 문학관 자료의 효율적인 유통 • 관리 및 이용 과 각종 문학관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 체제로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문학관 협력망(이하 "협력망"이 라 한다)을 구성한다. 1. 전산 정보 체계를 통한 정보 와 자료의 유통 2. 문학관 자료의 정리, 정보처 리 및 시설 등의 표준화 3.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상 호 대여 체계 구비 등 문학 관 운영의 정보화 · 효율화

<신 설>

- <u>4. 그 밖에 문학관의 상호 협력</u> 에 관한 사항
- ② 문학관은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서관법」, 「문화예술진흥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및 「지방 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미술관, 지방문화원 등 다른 문화시설과 협력하여야 한다.
- ③ 협력망의 조직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0조의3(재산의 기부) ① 누구 든지 문학관 시설의 설치, 문학 관 자료의 확충 등 문학관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부동산, 문학관 자료로서 가치가 있는 유물과 유품 등의 재산을 문학관에 기부 또는 기 증할 수 있다.
 - ② 국립문학관 및 공립문학관 은 제1항에 따른 기부 또는 기 증이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 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 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

<신 설>

할 수 있다.

제30조의4(자료의 양여 등) ① 문학관은 다른 문학관,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등과 문학관 자료를 교환・양여(讓與) 또는 대여하거나 그 자료의 보관을 위탁할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학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또는 「물품관리법」에 따라 문학관에 무상이나 유상으로 양여·대여하거나 그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③ 문학관은 제2항에 따라 문학관 자료를 대여받거나 보관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선량한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 항에 따라 자료의 보관을 위탁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존·처리 및 관리에 필요 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